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1가단14164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훈

변 론 종 결 2022. 6. 17.

판 결 선 고 2022. 8. 12.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663,719원 및 그 중 9,021,876원에 대하여 2021.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0. 10. 2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1) 피고 B은 2012. 8. 20. D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2018. 5. 31. 기준 총 9,221,218원(원금 9,021,876원 + 수수료 등 199,342원)의 카드이용금을 연체하였다. D 주식회사는 2018. 5. 3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E은 2018. 11. 16. 피고 B에 대한 위 카드이용금 연체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각 채권양도 통지가 순차로 이루어졌다.

2) 피고 B은 2018. 1. 4. E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고도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E은 2018. 12. 14.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 B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위 대출금 채권과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849140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 17. ‘피고 B은 원고에게 5,924,970원 및 그 중 4,476,451원에 대하여 2019.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2021. 6. 30. 기준으로, 위 카드이용금 연체채권은 원리금 15,663,719원 및 그 중 원금 9,021,87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고,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양수금 채권은 원리금 8,375,346원 및 그 중 원금 4,476,45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

나. 피고들 등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2020. 9. 24. 사망한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자녀로 피고들과 G를 두었는데, G는 2001. 9. 5.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이에 피고들과 대습상속인인 G의 딸 H이 각 1/3 지분씩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망인은 1995. 6.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5.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공동상속인들이 2020. 10. 26.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3) 이에 따라 2020. 10.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B의 재산상태

피고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I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대법원 등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D 주식회사, E로부터 양수한 카드이용금 연체채권의 원리금 15,663,719원 및 그 중 원금 9,021,876원에 대하여 2021.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위 카드이용금 연체채권 및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양수금 채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 C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피고 B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B은 당시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의신탁 주장에 대하여

피고 C은, 자신이 그 취득자금을 모두 부담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그 명의만을 망인에게 신탁하였던 것이고, 다른 상속인들도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기에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피고 C의 소유로서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피고 C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밖에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 C이 선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분할협의 중 피고 B의 상속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5다53704 판결 참조),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주현

별지

상속재산분할협약에 대한 취소를구하고 있으나, 갑 제11호증의 상속재산분할협약이 등기서류로 제출된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협약의 체결일을 2020. 10. 26.로인정한다.